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59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김미애 · 이양수 · 이달희  
이헌승 · 성일종 · 조경태  
강승규 · 김기현 · 김 건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보고 그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일부 낙후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 설치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사용·수용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수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률에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

런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공익사업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1조에 따라 승인 받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이하 이 조에서 “설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공사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의 필요성 및 공익성
2. 사용·수용으로 인한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등 관련 피해의 정도
3. 해당 지역주민의 에너지 이용 여건 및 생활 환경에 대한 영향
4.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등의 공익성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등이 결정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다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9조의5(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공익사업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1조에 따라 승인받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이하 이 조에서 “설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공사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해당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의 필요성 및 공익성</u></li> <li><u>2. 사용·수용으로 인한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등 관련 피해의 정도</u></li> <li><u>3. 해당 지역주민의 에너지 이용 여건 및 생활 환경에 대한 영향</u></li> <li><u>4.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등의 공익성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li> </ol> <p><u>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u></p>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이 결정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